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2020년 11월 27일(금)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2020년 11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장혜림(044-200-4596)

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29일(일) 낮 12시

담당: 유푸름 조사관(044-200-4599)

김훈형 조사관(02-2110-6109)

노
제
7
호
중
의

‘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한 대우조선해양(주)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153억 원·법인 고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153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
 -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법 위반 내용

가.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 대우조선해양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작업을 위탁함.

- 계약 서면 16,681건 가운데 서면 발급일보다 작업 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 발급일보다 최초 작업 실적 발생 일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나.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 수정 추가 공사: 사전 계획된 본 공사와 구분되는 작업으로, 선주 요청·오작·변형 등의 사유로 발생함.

** 제조원가: 사내 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함.

-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참고> 사내 하도급업체 시수 계약 관련 개념

■ 시수(MAN-HOUR) :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물량에 일정한 산식*(원단위 또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해짐.

* 원단위(단위 작업 물량당 소요되는 표준 시간) 및 각종 변수(작업장 환경, 생산성 향상률, 과제 특성) 등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 임률 단가 : 대우조선해양에서 직종별로 결정한 1시수당 단가

■ 시수 계약의 하도급대금 = "시수" × "임률 단가"

예) 임률 단가를 30,000원으로 가정하면, 특정한 작업 물량이 '10시수'로 산정될 경우의 하도급대금은 300,000원이 됨.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시수 계약의 하도급대금은 ‘시수’와 ‘임률 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시수’는 대우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임률 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 당 비용’ 기준을 판단했다.
 - * 사내 하도급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 내부에서 조선 관련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사무실·장비·기자재·설계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고, 오로지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하도급업체들임.
-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실제 투입 시수 × 최소한의 1시수 당 비용
 - **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에서 실제 투입 시수는 249,430시수였으나, 인정된 시수는 68,625시수에 불과했으며,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됨.
-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

□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에 필요한 철 의장품, 배관품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

○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조달 협업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 위탁 취소·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락' 항목을 선택하도록 함.

- 조달 협업 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외 하도급업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 조치 내용

□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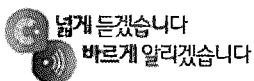
1. 대우조선해양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하여,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 발급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대금 결정 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협의 없이 위탁 취소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위탁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위탁 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수 신고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

-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대우조선해양(주)의 일반 현황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대우조선해양(주)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5년	170,750	138,029	-22,638	-16.4%
2016년	134,837	113,854	-14,135	-12.4%
2017년	110,227	106,340	7,165	6.7%
2018년	117,367	95,998	10,444	10.9%

2. 관련 하도급법령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